



환경부 공고 제2010-31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년 10월 15일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압수한 사행성게임기 등 압수물품의 위탁처리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고,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에 따른 제품 제조시 주문자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 이행 주체로 명시하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위탁시 직접 재활용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 지방 이양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압·몰수품"의 정의 및 압·몰수품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새로이 규정(안 제2조제18호 및 안 제15조의4)

-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몰수한 사행성게임기 등 압수물품의 공공기관 위탁처리 근거가 없어 압·몰수품의 자원화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압수물품 위탁처리 근거를 새로이 규정함
- (3) 공공기관을 통한 압수물품 위탁처리 근거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압수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 등의 경우 주문자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자 또는 재활용 의무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 납부시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단서, 안제19조제3항)

- (1)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부과 또는 재활용 의무 이행 주체가 불명확하였으며, 부담금 등 납부지연시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 등의 경우 주문자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자 및 생산자 책임재활용의무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 납부시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2로 경감

- (3) 부담금 납부대상자 및 재활용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금 납부지연시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소송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16조의2, 제21조, 제28조, 제29조 및 제41조)

- (1) 현행 제도의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 당해 품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활용의 적정성과 재활용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있음

- (2)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 위탁을 통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을 위한 운영관리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 위탁을 통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품목 재활용 사업자와 직접 재활용계약 체결의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지원을 위한 운영관리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시장의 건전성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안 제42조)

-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지방 이양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 (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부 공고 제2010-3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년 10월 25일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한·EU FTA 협상 체결 및 해양오염방지조약(MAPOL)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업무위탁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한·EU FTA 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소량판매하는 제작사의 배기관가스 평균량 수치를 조정함
(안 별표 17의 제1호 바목 비고 제3호 단서)
연간 25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47g/km(LEV 수준), 연간 250대 초과 4,00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37g/km, 연간 4,000대 초과 10,000대 이하 제작(수입)사는 0.030g/km

나. MAPOL 협정으로 규정된 사항 반영하여 선박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35)

- (1)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통제지역 밖 운행 선박 : Tier-2 적용

*기관출력정격회전수 : n ,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회전수)질소산화물 배출기준
 (g/kWh) 130kW 이상인 130rpm 미만이 경우 14.4 이하 n 이 130이상 2,000rpm 미만인 경우 $44.0 \times n (-0.23)$ 이하 n 이 2,000rpm 이상이 경우 7.7 이하

- (2) 해양환경관리법상 배출통제지역 안 운행 선박 : Tier-3 적용

*기관출력정격회전수 : n , 크랭크샤프트의 분당 회전수)질소산화물 배출기준
 (g/kWh) 130kW 이상인 130rpm 미만이 경우 3.4 이하 n 이 130이상 2,000rpm 미만인 경우 $9.0 \times n (-0.2)$ 이하 n 이 2,000rpm 이상이 경우 2.0 이하

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인증시험, 인증상락서 발급, 정기·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결함시정 및 부품 결함현황보고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안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72조 및 제77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